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87
----------	-------

발의연월일 : 2018. 9. 20.

발의자 : 김종희 · 장병완 · 정동영

박지원 · 김경진 · 윤영일

이찬열 · 황주홍 · 정춘숙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